

## 2024-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절차 및 기준(추가-스마트융합라운지)

단계	내용	일자
희망근로지 신청 (학생) (추가선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가근로장학금 1-2차 신청자 중 서류완료(성적, 소득분위 산정 완료)인 학생에 한하여 희망근로지 신청</li> </ul>	10. 29.(화)~10. 30.(수) * 30일 23:59 까지
희망근로지신청자명단 근로지송부 (장학지원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희망근로지 신청자 명단을 자체선발기준에 따라 정리하여 해당 근로지에 송부 (교내: 시스템 업로드, 교외: 이메일 송부)</li> </ul>	10. 31.(목) 11:00
근로지 면접 및 선발명단 회신 (근로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각 근로지에서는 장학지원과의 자체선발기준을 적용하여 장학생 선발 후 선발명단(선발여부에 Y값으로 표시하여) 제출 (교내: 시스템 제출, 교외: 이메일 제출)</li> <li>모든 학생에게 선발 결과 통보 필수(1차)</li> </ul>	10. 31.(목)~11. 1.(금) * 1일 23:59 까지
국가근로장학생 배정 및 최종 선발결과 통보 (장학지원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근로지 근로장학생 선발 결과 취합 후, 근로지 배정 및 최종 선발결과 안내</li> <li>* 장학공지 게시 및 개별 문자 안내(2차)</li> </ul>	11. 4.(월)
오리엔테이션 (장학지원과-학생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최종선발자는 장학지원과에서 주최하는 오리엔테이션 참여</li> <li>오리엔테이션 미참여자는 근로 진행 불가능</li> <li>인수인계는 근로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</li> </ul>	선발 학생과 일자 조율 후 안내
국가근로장학생 근로시작 (학생, 근로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024-2학기 국가근로장학 시작</li> <li>근로 시작일로부터 5일 내에 근로지 안전교육 진행(업무스케줄 시간 내 교육 진행)</li> <li>근로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육이수보고서 업로드</li> </ul>	오리엔테이션 진행 이후

\* 학사일정, 한국장학재단 일정에 따라 선발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# 2024-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기준

## 1. 국가근로(일반교내, 교외) 선발기준: 배점방식

### 가. 배점항목 및 배점점수(총 100점)

배점항목	학자금 지원구간	성적	인성(면접)	신규참여	이전 근무평가
배점점수	40점	30점	20점	10점	-10점

※ 신규참여(직전학기 참여 Y=0 / 미참여 : N=10)

※ 직전학기 미입력사유서 횟수(2회 이상) 초과자는 장학지원과에서 -10점 감점 후 명단 업로드 예정

### 나. 학자금 지원구간별 환산점수

학자금지원구간 환산점수										
기초생활수급자	차상위	1분위	2분위	3분위	4분위	5분위	6분위	7분위	8분위	9분위
40	40	35	30	25	20	10	10	5	5	5

※ 동 순위자의 경우 학자금지원구간, 성적, 인성(면접), 신규참여 점수 순으로 선발

※ 같은 조건의 동점자 발생 시 희망근로지 신청자를 우선선발, 희망근로지 미신청자는 근로지 지원동기에 "희망근로지 미신청자로"로 표기하여 명단 업로드 예정(n차는 희망근로지 미신청자 명단반영 x)

## 2. 유의사항

가. 배점방식으로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근로장학생 선발

나. 학자금지원구간 환산점수, 직전학기 성적점수, 신규참여 점수, 종합점수 등은 자동환산, 인성(면접) 점수는 근로지 면접 진행 후 근로지에서 직접 입력

다. 학생이 면접을 포기하는 경우 "면접의사없음"으로 자동탈락

라. 각 부서에서 면접을 진행한 학생 전원에게 선발 결과 통보(선발 및 탈락 여부)

마. 장학지원과에서 공지사항 및 개별 연락으로 최종 선발결과 안내

## 3. 신청제외자

가. 휴학생, 수료생, 졸업생, 자퇴생, 대학원생, 조기취업자, 산업체 위탁생, 시간제 등록생, 평생교육 시설등록생, 제적생,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, 초과학기생, 졸업유예 등

나. 기존 국가근로장학생으로 근무 중 부정근로자

다. 국가근로장학생은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등 기타 재단사업, 목원근로, 학과(부)근로, 기자재근로, IPP 사업, 현장실습 등 다른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능(추후 발견 시 장학금 환수)